

증평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 [2025. 5. 9 조례 제1213호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」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) ① 증평군수는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증평군 소속 공무원이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」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」 제35조 별표 2에 따른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